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7월 15일, 신장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7.22.)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장식 의원)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최근 기상이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정책은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함께 농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인 생산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